

보도해명자료

KDI 홍보팀 958-4030 press@kdi.re.kr

2013. 2. 19.

제 목: 한국일보 2월 19일자, “현오석,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2억원 인출” 제하 보도관련 해명

한국일보는 2월 19일 “현후보자는 18일 2011년 말 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부인과 함께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고 보도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사는 솔로몬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시기를 2011년 말로 보도하고 있으나,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기는 2012년 5월임.
- 내정자는 저축은행 예금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1년에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솔로몬 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2012년 5월과 시기상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저축은행 банкрот 사태 등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2월 18일 해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4월 경기솔로몬 저축은행 2개 계좌가 만기도래하여 인출하였고, 2011년 10월 솔로몬 저축은행 1개 계좌가 만기도래하여 인출하였으며, 나머지 솔로몬 저축은행 1개 계좌는 10월이 만기였으나 내정자 소유 반포 아파트 구매(2011년 7월) 자금을 충당기 위해 출금한 것임.
- 아파트 구매자금 충당을 위해 2011년 7월 예금을 중도인출한 후에도 솔로몬저축은행 1개 계좌는 만기가 도래하는 동년 10월까지 예금을 유지하였음.

<저축은행 4개 계좌 만기 및 인출시기>

저축은행명	만기	인출시기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1	2011년 4월	2011년 4월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2	2011년 4월	2011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 계좌 1	2011년 10월	2011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 계좌 2	2011년 10월	2011년 10월

※문의: 장혁순 KDI 대외협력실장